
- 2015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 획 감 사 실]

2015년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시행 년도	제 목	비고
		21건	
1	2013~ 2015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2	2015	급량비 집행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	
3	2013~ 201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4	2015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5	2013~ 2015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6	2013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착오	
7	2014~ 201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8	2014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 부적정	
9	2014~ 2015	농로(마을안길) 포장공사 편입토지 사용승락서 미징구	
10	2013~ 2014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11	2013~ 201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2	201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3	2014~ 2015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14	2014~ 201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15	2013	세출예산 집행(포인트 적립) 부적정	
16	2013~ 201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7	2013~ 2015	인감증명서 업무처리 부적정	
18	2014~ 2015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19	2014~ 201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20	2014~ 2015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 부적정	
21	2007~ 2015	신고효력 상실 및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감독소홀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6,929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카드결제 계좌 현황

(단위 : 원)

통장잔액 (2015.8.27.)	결제대금 미청구액	추징 대상 금액		
		합계	이자발생액	기타(원인 불명)
16,929	0	16,929	4,192	12,737

나. 카드결제 통장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건 명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계		4,192	
2014년 상반기 통장이자	2014. 6.29.	1,501	미조치
2014년 하반기 통장이자	2014.12.28.	2,223	미조치
2015년 상반기 통장이자	2015. 6.28.	468	미조치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착오입금 등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납조치를 하는 등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3에 따르면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 “가”와 같이 잔액 16,929원 중 2015.06.28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4,192원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으며, 그 외 12,737원이 확인되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결제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현재 법인카드 계좌에 이월된 12,737원과 2014년 6월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4,192원을 세입조치 하여 주시고,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급량비 집행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결재방법
계	8건		1,308,000	
2015	2015. 2.12.	2014년 12월 시간외 급식비	80,000	신용카드
2015	2015. 2.12.	1월 시간외 급식비	146,000	신용카드
2015	2015. 3.12.	2월 시간외급식비 지출	216,000	신용카드
2015	2015. 5. 4.	3월 시간외급식비 지출	285,000	신용카드
2015	2015. 5.21.	4월 시간외급식비 지출	217,000	신용카드
2015	2015. 6. 3.	5월 시간외 급식비 지급	98,000	신용카드
2015	2015. 7.23.	6월 시간외 급식비 지급	133,000	신용카드
2015	2015. 8.18.	7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133,000	신용카드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시 1인 1식당 7천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5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관리비(201-01)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지급하면서 총 8건 1,308천 원을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준수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현황 : 15건 11,073천 원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

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09.26. 직원회식비 비용 509천 원 등 15건 11,073천 원을 지출하면서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20,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착 오 부과액	정 상 부과액	비 고
1	○○○○		2015.05.0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이상)	40,000	20,000	20,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의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등록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아 20,00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다 부과된 주민등록 과태료 20,000원을 환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989,500원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원)

구 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비 고
계		41	4,989,500	4,654,500	335,000	
법인균등분	소계	32	3,685,000	3,350,000	335,000	
	2013	9	1,320,000	1,200,000	120,000	
	2014	9	990,000	900,000	90,000	
	2015	14	1,375,000	1,250,000	125,000	
재산분	소계	9	1,304,500	1,304,500		
	2013	3	607,250	607,250		
	2014	2	311,000	311,000		
	2015	4	386,250	386,250		

2. 내 용

주민세(법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6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9건 1,304,500원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균등분)(27개소) 32건 3,685,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재산분) 9건 1,304,500원과 주민세(법인균등분) 32건 3,685,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시고, 매년 정기분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12,240원

【제 목】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착오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세 목	연도별	건수	계	재산세	지 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비 고
재산세 (건축물)	2013	7	312,240	227,160	39,660	45,420	

2. 내 용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르면 마을회(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함)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7건 312,240원을 착오로 감면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착오로 감면 처리한 재산세(건축물분) 7건 312,240원을 조속한 시일 내 과세 조치하고, 매년 정기분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장애인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신청일자	신청(주) 장애유형(성명)	보장구분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용	비고
계	8명				
2015.03.17	정신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10.10	지체(하지절단)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5.12	정신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5.12	안면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8.26	정신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7.29	정신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3.04	뇌병변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1.23	정신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 내 용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차상위계층인 자에게는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신청시 저소득장애인인 경우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장애등록 및 재진단 신청시에 신청자가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신청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애인등록 신청시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안내 하도록 장애인등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조사업 시설물 현황

년도	보조시설물	사업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4명	4대	51,200	24,000	27,200	
2014년	곡물건조기	원덕읍	★★★	1	13,300	6,000	7,300	
2014년	곡물건조기	원덕읍	☆☆☆	1	12,000	6,000	6,000	
2014년	곡물건조기	원덕읍	●●●	1	12,600	6,000	6,600	
2014년	곡물건조기	원덕읍	◎◎◎	1	13,300	6,000	7,300	

2. 내 용

「농림축산식품산업사업지침서」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정책과-8429(2014. 6. 19)」 호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읍면동에서는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2014년도에 추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2014년도에 추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4건에 대한 보조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 주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로(마을안길) 포장공사 편입토지 사용승락서 미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구분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공사기간	편입토지 내역		사용승락 징구여부	비고
					지번(지목)	면적(m ²)		
계		12건	229,850			약 1,973		
1	●●리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46m	19,233	'14.04.01 ~ 05.28		87	미징구	
2	★★★리 암거 및 농로포장공사	석축공사 L=51m	22,950	'14.04.01 ~ 06.18		51	미징구	
3	☆☆☆리 농로 포장공사	농로포장 및 석축 공사 L=114m	16,016	'14.04.09 ~ 06.30		126	미징구	
4	○○○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70m	15,321	'14.04.11 ~06.09		85	미징구	
5	◇◇◇리 농로확포장공사	U형측구 및 옹벽 L=78m	19,220	'14.04.11 ~05.12		24	미징구	
6	◆◆◆리 농로포장 공사	콘크리트포장 L=139m	19,470	'15.04.06 ~05.07		347	미징구	
7	□□□리 농로포장 공사	콘크리트포장 L=144m	19,280	'15.04.06 ~05.12		216	미징구	
8	○ ○ 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콘크리트포장 L=25m	7,640	'15.04.15 ~05.15		75	미징구	
9	○ ○ ○ 리 농로확포장 공사	암거및농로포장 L=47m	43,380	'15.05.07 ~07.06		68	미징구	
10	■ ■ 리 농로포장 공사	콘크리트포장 L=74m	13,800	'15.04.15 ~05.14		222	징구	
11	△ △ △ 리 농로포장 공사	콘크리트포장 L=309m	16,360	'15.04.15 ~05.07		627	징구	
12	▲ ▲ ▲ 리 도로확포장 공사	콘크리트포장 L=76m	17,180	'15.08.19 ~09.17		45	징구	

2. 내 용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장을 하였고, 사유재산권은 재산의 소유와 관리, 사용, 처분을 재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14년~’15년 추진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농어촌 주민들의 통행편익과 영농 불편 해소를 통해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축산물 수송 및 농기계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임으로 사업이 완료된 농로 및 마을안길은 다수인이 사용하여야 하는 공동임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대한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리 농로 포장공사”의 2건의 공사는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였으나, “●●리 농로 포장 공사”의 8건의 공사는 편입되는 18필지 약 1,079㎡의 토지에 대하여는 마을회의를 통해 선정 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함으로서 편입된 토지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토지소유자의 명의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 또는 포장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경우 재정낭비 및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처 분 요 구】

-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미 징구된 9건의 토지의 사용승락을 징구하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 ★★리 628외 2 ●●●●(주)외 27건
- 2010.1~2015.8. 존치기간 현재 기준

2. 내 용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락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① 존치기간 만료일 ②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③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에서는 존치기간이 도래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철거 등의 조치를 하거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 28건 중 15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철거가 이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리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13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자진 철거 등 시정명령 없이 지도감독 및 행정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존치기간이 도래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철거 등의 조치를 하거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고, 철거가 이행된 15건은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13건에 대하여 자진철거 등 행정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현황

번호	세출예산과목 집행현황	건수	지급액(원)
	계	76건	11,308,210
1	공공운영비(201-02)를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한 경우	2건	405,630
2	사무관리비(201-01)를 공공운영비(201-02)로 집행한 경우	74건	10,902,58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대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고, 공공운영비(201-02)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우편요금 등 2건 405,630원을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였으며, 무인경비, 정수기, 전기안전관리, 액자 구입 등 74건 10,902,580원은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집행하는 등 2013. 9.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6건 계 11,308,210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현황

(단위:원)

지급일자	내 용	지급액	통계목	비고
	2건	1,126,000		
2014.01.03	직원회식비	506,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4.12.30	○○○○ 만찬 제공	620,000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1.3. 직원회식비 비용 506천 원 등 2건 1,126천 원을 지출하면서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도	납입 지연 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11건	774,800				
2014	9건	604,000	불 입	○○○○주민센터	불 입	
2015	2건	170,800	”	”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01.23.부터 2015.08.18.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11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장애인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신청일자	신청(주) 장애유형	성명	보장구분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용	비고
계	11명					
2014.10.29.	정신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4.08.11.	정신		"	"	"	
2015.01.14.	정신		"	"	"	
2015.02.24.	간질		"	"	"	
2015.02.25.	신장		"	"	"	
2015.03.24.	청각(청력)		"	"	"	
2015.03.16.	지체(상지관절)		"	"	"	
2015.03.16.	청각(청력)		"	"	"	
2015.04.30.	지체(척추)		"	"	"	
2015.06.17.	호흡기		"	"	"	
2015.08.17.	시각		"	"	"	

2. 내 용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차상위계층인 자에게는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장애등록 및 재진단 신청시에 신청자가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신청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애인등록 신청시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안내 하도록 장애인등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포인트 적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적립내역

(단위:원, 점)

사용일자	내 용	사용금액	적립포인트		비고
			홈플러스	OK캐쉬백	
	2건	484,560	2,178	484	
2013.09.10	직원 격려품 구입	198,000	891	198	
2013.12.02	○○○ 직원 선물 구입	286,560	1,287	286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 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9.10. 직원 격려품 구입 198,000원 등 2건 484,560원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홈플러스 2,178점, OK캐쉬백 484점 적립 포인트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에 대하여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가.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 8건 / 5,302천 원
- 나. 영수증 및 집행내역서 미첨부 : 5건 / 250천 원

2. 내 용

가.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9.27. 직원 송별회 만찬 비용 700천 원 등 8건 5,302천 원을 지출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나. 영수증 및 집행내역서 미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 공통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1.3. 상근직원 부의금 지급 50천 원 등 5건 250천 원의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하시고,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감증명서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의 발급 교부 현황

연도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건수	접수인 날인 건 수	발급번호 표시건수	비고
계	77건	-	-	
2013	12	-	-	
2014	35	-	-	
2015	30	-	-	

2.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 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 사무편람」 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때에는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제출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감증명을 위임 발급함에 있어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 및 발급번호 표시의 조치 없이 위임장을 보관하는 등 인감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감증명업무 처리 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11,000원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4	311,000	301,000	10,000	
법인균등분	2014	2	110,000	100,000	10,000	
재산분	2015	2	201,000	201,000		

2. 내 용

주민세(법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2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2건 201천 원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 균등분)(2개소) 2건 110천 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재산분) 2건 201천 원과 주민세(법인균등분) 2건 110천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시고, 매년 정기분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장애인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신청일자	신청(주) 장애유형	성명	보장구분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용	비고
계	7명					
2015.01.07.	간질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	미신청	
2015.02.10.	정신		"	"	"	
2015.03.16.	지체(척추)		"	"	"	
2015.03.30.	정신		"	"	"	
2015.04.01.	정신		"	"	"	
2015.06.23.	지체(상지기능)		"	"	"	
2015.08.20.	청각(청력)		"	"	"	

2. 내 용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차상위계층인 자에게는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장애등록 및 재진단 신청시에 신청자가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신청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애인등록 신청시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안내 하도록 장애인등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조사업 농기계관리대장 미비치 현황

보조사업	사업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계		55명	55대	123,830	80,779	43,051	

2. 내 용

「농림축산식품산업사업지침서」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4년도에 추진한 관리기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2015년 9월 22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미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2014년도에 추진한 관리기 지원사업 55건에 대한 보조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 주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07~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고효력 상실 및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신고일	대지위치	건축주	연면적(m ²)	용도	층수	신고면적(m ²)	비고
착공신고일			건축면적(m ²)				
2007.11.20	◇◇리 87	★★★★	693.11	공장	1	증축 79.88	효력상실
-			474.89				
2009.7.16	●●●리 736외 2필지	☆☆☆	210.6	축사 및 퇴 비사	1	증축 34.8	사전사용
2007.7.21			223.4				

2. 내 용

가.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면에서는 2007.11.20 건축신고를 이행한 ○○면 ◇◇리 87, ◆◆◆의 공장용도 건축물 79.88㎡ 1층 증축 건에 대하여 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세움터의 건축신고대장에 “효력상실”을 기재하여 종결처리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나.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감독 소홀

「건축법」 제22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09.7.16 건축신고, 2007.7.21 착공신고를 이행 하고 완공되어 사용중인 ○○면 ●●●리 736외 2필지 진수봉의 축사 및 퇴비사 용도의 건축물 34.8㎡에 대하여 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적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축신고 수리 통보시 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 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 시고 1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신고대장에 기재하여 종결처리 하여 주시 기 바라며,
- 앞으로, 건축신고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완공 된 건축물을 사전사용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